#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2호)

ㅇ 2026.10.15.

ㅇ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9. 17.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26.10.15.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밝은미래국장)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서초 AICT 스타트업 펀드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의결 요청 사항 :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출자』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최충열)

## ▣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제1항[1]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제1항제1호[2]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 2026년 9월 1일 기준 기금 총액은 187억 8,384만원으로,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 177억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 운용수입 10억 8,384만원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왔으며, 이 중 153억 5,500만원을 219개 업체에 융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통장잔액은 34억 2,800만원인 것으로, 그 운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기금 운용현황**

○ 기금총액 : 18,783,845,791원 (2026. 9. 1. 기준)

○ 조성 및 운용현황

- 조성현황 : 전입금 17,700백만원
  운용수입 1,083백만원(예치금 이자수입 등)

(단위 : 연도 / 백만원)

| 계 | 1993 | 1994 | 2000 | 2007 | 2008 | 2009 | 2010 | 2021 | 2023 | 2024 | 2025 |
|---|---|---|---|---|---|---|---|---|---|---|---|
| 17,700 | 1,000 | 500 | 500 | 500 | 1,000 | 3,500 | 600 | 500 | 5,000 | 2,000 | 2,600 |

※ 2026년 세출예산 내 전출금 2,000백만원 편성, 전입 예정

1)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운용현황 : 융자액 15,355백만원(219개 업체, 기상환업체 제외)
통장잔액 : 3,428백만원

○ 기금 조성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1993년 최초 10억원의 전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여 왔으며, 특히 2023년 50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26억원 등이 전입되는 등 최근에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26년 세출예산에 20억원의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기금 재원 확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 이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도 기금의 운용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 할 것임.

## ▣ 출자 배경 및 취지

○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는 대기업 연구개발시설과 중소·벤처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2024년 11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AI 인재양성, 스타트업 창업·성장지원,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도 특구의 주요 특화사업으

로 추진되고 있고,

○ 이후 양재 지역의 AI 산업 기반을 AI와 ICT가 결합된 산업생태계로 확대하기 위하여 「서초 AICT」를 중심으로 기업 육성, 연구개발, 투자유치 및 산·학·연 협력 등을 연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초구는 2026년 2월 양재 AI 특구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아우르는 서초 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양 지역의 연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책환경에서 서초구는 2025년부터 「서초AICT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1호 및 2호 펀드에 이어 3호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AI·ICT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으로,

○ 금번 3호 펀드 출자는 5년간 총 100억원을 출자하여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구 출자금을 마중물로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양재 AI 특구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산업기반 및 기업지원 정책을 투자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3]제1항에서

3)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책적 필요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법령상 출자 근거와 함께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요구되는 구조임.

○ 이와 관련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나아가 본 출자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5]에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

---

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4)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5)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으로 벤처투자조합인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해당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금 활용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5호[6]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기금의 출자 가능성을 구 조례에서 구체적인 기금 운용 근거로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출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출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별 기능은 다음과 같음.

**법령별 기능**

| 구 분 | 관련 규정 | 주요 내용 | 본 출자와의 관계 |
|---|---|---|---|
| **출자 일반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가능 | 출자의 법적 근거 필요 |
| **의회 의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출자 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 필요 | 본 동의안의 직접적인 절차적 근거 |
| **기금 활용 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금의 설치·활용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근거 |
| **펀드 출자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 |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가능 | 3호 펀드 출자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

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28., 2025. 4. 17.>
1.~4. 생략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1. 11. 8.]

| | | | |
|---|---|---|---|
| **구체적 기금 용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제5호 | 벤처투자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 | 구 기금에서 실제 출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 |

## ▣ 출자 및 펀드 조성·운용계획

### ○ 펀드 조성 및 출자계획

-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는 서초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200억원 이상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대상은 양재 등 서초구 관내에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AI·ICT 스타트업으로 하고,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초구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으로,

- 펀드의 운용기간은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으로 하며, 투자기간 4년과 회수기간 4년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전체 펀드 조성계획은 총 1,100억원 규모로 구 출자금 100억원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1,000억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구 출자금 20억원을 출자할 계획임.

**출자 및 조성계획**

| 구 분 | 주요 내용 |
|---|---|
| **펀드명** |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 |
| **조합형태** | 벤처투자조합 |
| **구 출자금** | 20억원 |
|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 **펀드 조성목표** | 200억원 이상 |

| | |
|---|---|
| **자금구성** | 구 출자금 + 모태펀드 + 민간자본 등 |
| **투자대상** | 양재 등 서초구 관내 소재 또는 이전 예정 AI·ICT 스타트업 |
| **지역투자 조건** |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초구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투자 |
| **운용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투자 4년, 회수 4년) |

○ 연도별 펀드 조성계획

- 서초AICT 스타트업 펀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구 출자액은 총 100억원,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는 총 1,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도별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음.

**연도별 조성계획**

| 구 분 | 연차별(억원) | | | | | |
|---|---|---|---|---|---|---|
| | 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 조성목표액 | **1,100** | 300 | 200 | 200 | 200 | 200 |
| 구 출자액 | **100** | 30 | 20 | 20 | 20 | 10 |
| 모태펀드+민간투자 | **1,000** | 270 | 180 | 180 | 180 | 190 |

○ 운용사 선정 및 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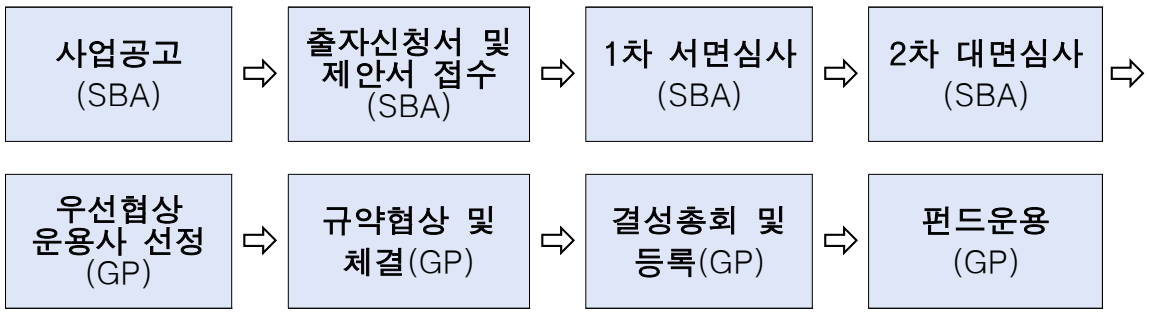
- 펀드 운용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한국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로부터 선정된 운용사를 신청대상으로 하여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친 후 우선협상 및 운용사 선정, 규약 협상·체결, 결성총회 및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음.

**펀드 운용 및 관리계획**

## □ 운용계획

### ㅇ 펀드 운용사 모집(안)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한국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로부터 선정된 운용사
- 펀드결성 시한 : 최종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선정절차




ㅇ 펀드 결성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기업별 투자한도: 펀드 운용사와 협의· 결정

ㅇ 기준수익률: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기준 수익률 규정 준용

ㅇ 펀드운용 보수: 모태펀드 출자사업 공고 보수 규정 준용

- 관리보수: 2%~2.5%
-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 □ 투자금 회수

-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등 정규 Exit과정을 통한 투자금 회수
- KONEX(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 KSM(스타트업기업 전용 장외시장)을 활용, 필요시 조기 회수
- 세컨더리 펀드*, 세컨더리 마켓** 및 VC 구주거래유통망 등 중간 전문 매입기관 활용 회수 등

  * 세컨더리 펀드 :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을 올리는 펀드

  ** 세컨더리 마켓 : 비상장주식 및 투자지분이 거래되는 시장(투자자간 1:1 거래)
- 기존투자자가 투자지분을 판매하고, 이를 인수한 신규투자자는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

## ▣ 출자(펀드조성)의 필요성

○ 지속적인 투자 기반

- 서초구는 양재·우면 일대의 연구개발 및 기업집적 기반을 바탕으로 AI·ICT 분야를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구 및 ICT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AI·ICT 분야는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속 투자까지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져야 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년도 사업이나 일회성 보조방식과는 다른 지속적인 투자수단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서초구가 직접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운용사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ICT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펀드 방식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 산업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융자 중심 지원의 보완

- 현재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주로 중소기업 융자 및 이차보전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경우 담보 및 안정적인 매출이 부족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한 특성이 있어 전통적인 융자방식만으로는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AI·ICT 스타트업은 기술 및 사업모델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연구개발, 인력확보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특성이 강하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능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방식까지 확대하여 융자와 투자를 기업의 성장단계 및 자금수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자본 유입 및 투자 확대

-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과 투자심리 등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유망기업이 충분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단순히 기업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과 결합하여 보다 큰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번 3호 펀드는 구 출자금 20억원을 기반으로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 등을 결합하여 2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재원의 직접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재원을 지역 AI·ICT 스타트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민간자본을 유입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기업 유입·성장 지원

- AI·ICT 분야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기관, 연구기관 및 관련 산업이 상호 연계되는 산업생태계의 형성 여부

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에 따라 우수한 스타트업이 서초구에 유입되고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제공하는 것은 양재·서초 AICT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펀드 출자금의 일정 규모 이상을 서초구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설정한 것은 단순한 재정지원과 달리 공공 출자재원을 지역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려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 출자(펀드조성)의 적정성 · 타당성

○ 출자규모 및 재원 배분

- 금번 서초AICT 스타트업 3호 펀드에 대한 출자금은 20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여 구 출자금 대비 10배 이상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라 할 것이고,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등을 위해 운용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출자에 따른 기존 융자사업의 재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기금 규모와 기존 융자사업의 운용현황 등을 감안할 때 20억원을 출자하는 것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현저히 제약하는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음.

- 또한 구 출자금 20억원을 통해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을 결합하여 200  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구조인 만큼, 제한된 기금재

원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향후 추가적인 펀드 출자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사업 등 기존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원 배분 상황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펀드와의 중복성 및 추가 출자

- 서초구는 이미 서초AICT 스타트업 1호 및 2호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3호 펀드의 추가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 펀드와 투자대상 및 투자수요가 중복되지 않는지, 기존 펀드의 투자성과와 잔여 투자여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특히 동일한 AI·ICT 분야를 대상으로 여러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구조인 만큼, 단순히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펀드에서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분야나 성장단계별 기업, 신규 투자수요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펀드별 투자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에 따라 3호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1·2호 펀드의 투자현황과 성과를 함께 분석하여 투자대상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추가 출자의 필요성이 실제 투자수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투자 및 성과관리

- 3호 펀드는 구 출자금의 200% 이상을 서초구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지역투자 조건을 설정하고 있어, 구 재원이 관내 기업

의 성장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지역투자 효과를 확보하는 구조로 보이고, 다만 지역투자 비율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출자의 성과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투자기업의 매출·고용·후속투자 유치 등 기업 성장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펀드의 운용성과는 운용사의 투자역량과 투자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운용사 선정 시 AI·ICT 분야에 대한 투자실적과 전문성, 투자기업 발굴 및 후속투자 연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도 투자실적과 회수성과의 지속적 점검이 요구됨.

- 이상과 같이 금번 출자는 기존 1·2호 펀드와의 중복 가능성,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재원배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역투자 효과 및 향후 성과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20억원의 출자를 통해 200억원 이상의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관내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자규모와 방식은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다만 출자재원이 단순한 펀드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부터 투자 및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양재 AI 미래융합혁신특구 및 ICT 관련 산업기반을 바탕

으로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수단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방식을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방식까지 보완하기 위하여 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지역 내 AI·ICT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투자재원을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활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출자를 추진하는 구조로서 법적·절차적 요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미 1·2호 펀드를 통해 AI·ICT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금번 3호 펀드의 추가 출자는 기존 펀드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투자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존 융자사업에 필요한 재원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특히 펀드의 성과는 단순한 펀드 결성 규모나 투자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AI·ICT 분야의 투자경험과 운용실적, 기업 발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용 이후에는 관내 기업에 대한 실제 투자집행과 기업의 유입·정착 및 성장, 후속투자 유치, 투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번 20억원의 출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여건과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출자규모 및 방식이 수용 가능한 범

위로 판단되며, AI·ICT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외부 투자재원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출자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3호 펀드가 기존 1·2호 펀드와 차별화된 투자수요를 충족하고 실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 투자대상 및 투자성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여 출자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기존 1·2호 펀드와 차별화하여 서초구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답〉 현재 펀드는 전문 운용사가 투자 가능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서초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와 지역 내 기업의 수요가 투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음.

**질〉 AI 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콘텐츠 등 서초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답〉 현재 펀드는 AI·ICT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문화콘텐츠 기업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음. 특정 기업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확인하고, 콘텐츠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문 운용사와 협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